■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1997년 이후 동결되어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를 실시

2. 주요 내용

- 일반사망보험금 및 연금보험금 한도액 증액

1997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일반사망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의 한도액을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각각 4000만원에서 1억원, 9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조정(안) >

구분	현재	조정(안)	비고
일반사망보험금	40,000,000원	100,000,000원	150% 인상
연금보험금	9,000,000원	30,000,000원	333% 인상

3. 의견제출

-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19년</u> <u>10월 9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00-2961, 팩스: 02-2100-2947, 이메일: hcyun@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고시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 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